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10 월 30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 이룸투자자문  
(영문명) IROOM INVESTMENT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iroomi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(여의도동, 대영빌딩)  
(전 화) 02-761-1694

대 표 이 사 : 조 세 훈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대표이사  
(성 명) 조세훈 (전 화) 02-761-1694

작 성 자 : (직 책) 대리  
(성 명) 유진숙 (전 화) 02-761-1694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1-11-1호)

###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

1. 일시	2015.10.30	오전 9시
2. 장소	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(여의도동)	
3. 의안 주요내용	제1호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- 사업목적추가 :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 집합투자업	
4. 이사회 결의일(결정일)	2015.10.16	
-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-
	불참(명)	-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불참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		

**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**

구 분	내 용	이 유
1. 사업목적 추가	전문사모집합 투자업	
2. 사업목적 삭제	-	
3. 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
	1.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국내외 기업,경제,산업 및 증권,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1.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국내외 기업,경제,산업 및 증권,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<b>1. 전문사모 집합투자업</b>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(제11-11-2호)

임시주주총회 결과

1. 결의사항	제1호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- 사업목적 추가
2. 주주총회 일자	2015-10-30
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해당사항 없음

【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】

구 분	내 용		이 유
1. 사업목적 추가	전문사모집합투자업		
2. 사업목적 삭제			
3. 사업목적 변경	변경 전	변경 후	사업 다각화
	1.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증권, 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1.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업 1.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자문 1.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증권, 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및 판매 1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 및 자문에 관한 용역 제공 1. 부동산 투자업 <b>1. 전문사모 집합투자업</b> 1. 위 업무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은 업무 1. 위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	